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7-74호

도시관리계획(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신길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58호(2011. 9. 8.)로 결정(변경)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신길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신길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7년 7월 27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가. 결정(변경) 취지

신길재정비촉진지구 신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영진시장(B동)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(보행자전용도로) 결정 및 지침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임.

나. 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신길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사항

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

-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교통시설)
- 도로 : 변경(신설)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신설	소로	3	1	2.3~4.5	특수 도로	41	신길동 2363	신길동 2363-2	보행자 전용도로	-	-	-

- 도로 신설 사유서

도 로 명	신 설 내 용	신 설 사 유
소로 3-1	·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- 폭원 : 2.3~4.5m - 연장 : 41m	·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상지 북측에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(영진시장에서 조성 후 영등포구에 무상제공)

②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

- 영진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(A,B) 지침(변경) : 영진시장(B동)에 한함.

구 분	계 획 내 용		비 고
	기 정	변 경	
기반시설	· 구역면적의 10%이상 확보	· 변경없음	· 대상지 북측 기반시설(보행자전용도로) 확보
건축선	· 상도동길 및 15m도로변: 3m · 이면도로변: 2m	· 상도동길 및 15m도로변: 3m · 이면도로변: 1~2m	· 건축허가(2005. 6. 9.) 내용 반영하기 위해 지침내용 변경

※ 건축선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전 종전규정(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)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임.

- 허가 당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: 이면도로변 1~2m (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: 서고2002-152호, 2002.4.22.)

○ 기타 변경사항 없음.

다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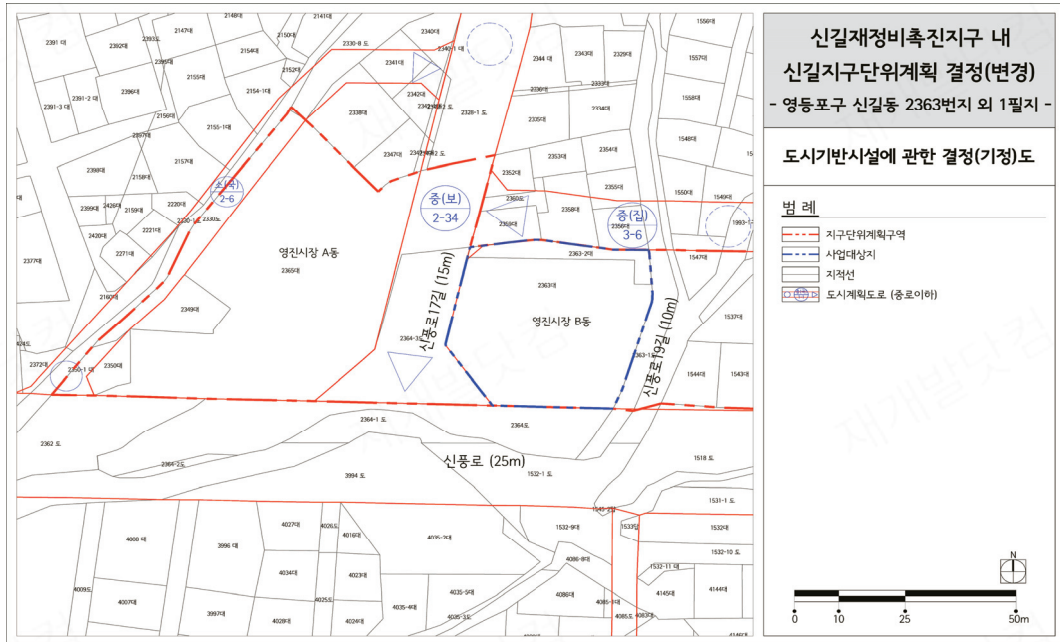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공보에 고시를 하기 위한 도면으로써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라. 열람장소 :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 도시계획과(☎2670-3542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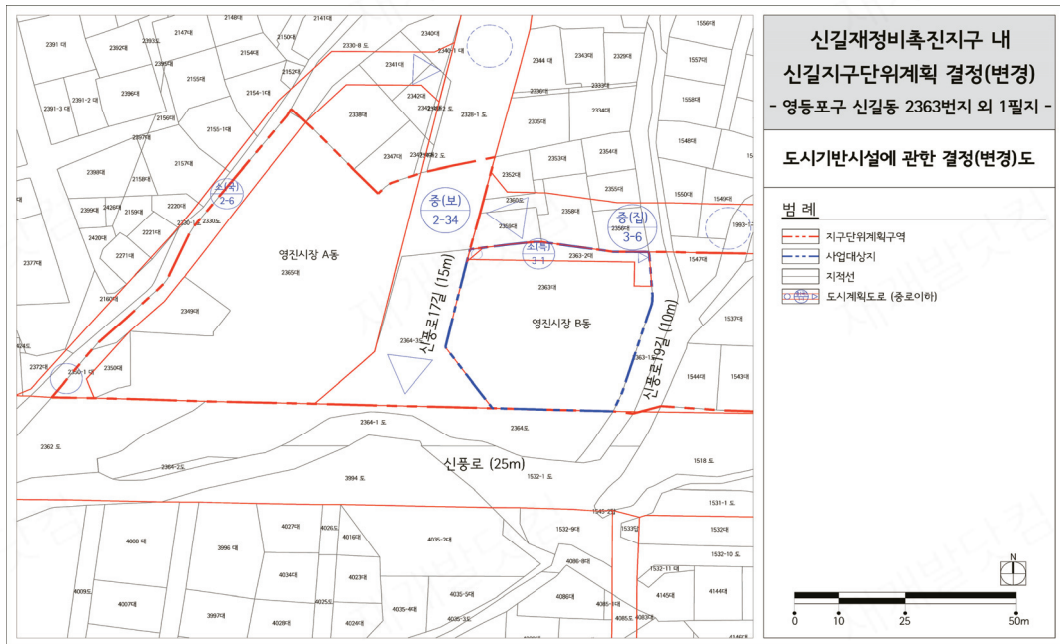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도시관리계획(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신길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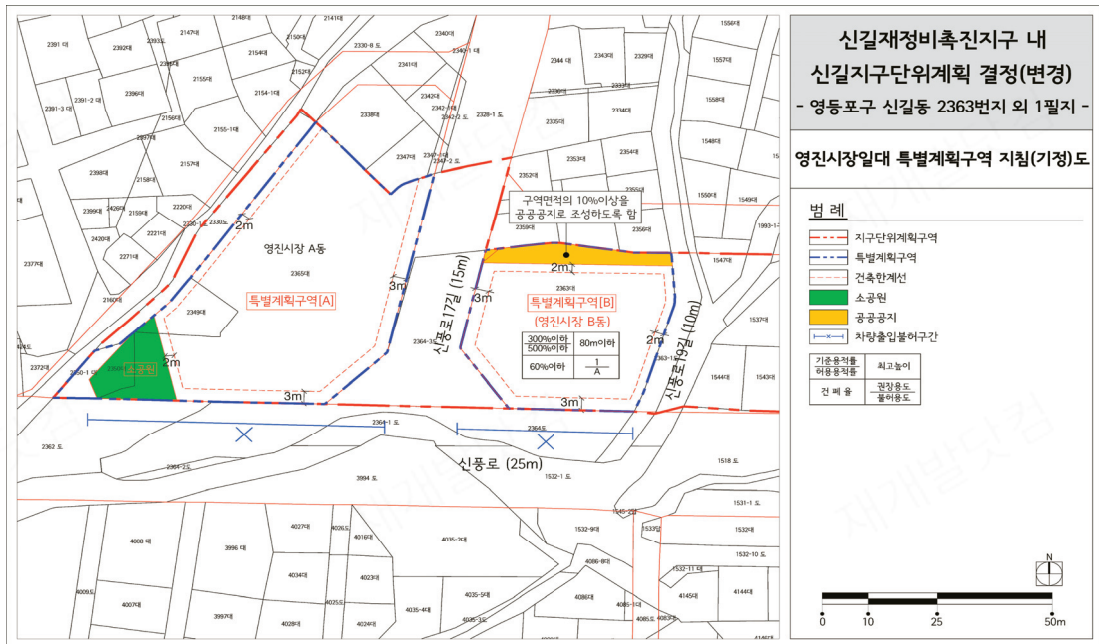
○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○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

○ 영진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침(기정)도



○ 영진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침(변경)도

